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21일, 손명수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8. 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5. 9. 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손명수)

현행법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에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통계 작성·관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나, 운전자 나이·차령·시장진입 비용·물량확보 방법·운송수입 및 지출 구조 등 기초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관리 및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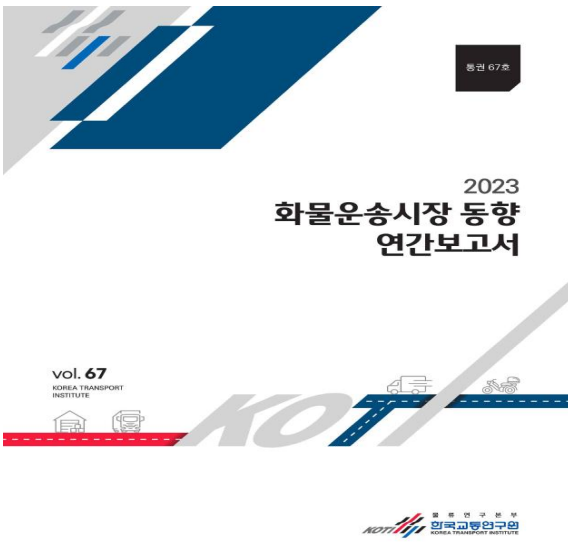
(전문위원 : 임종수)

가. 검토의견

지난 2003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대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감사원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음.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실태조사 실시 근거는 없으나,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2005년부터 화물운송시장의 통계데이터 생산·분석을 통한 정보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화물운송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화물운송시장 정보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화물운송시장 동향 보고서 】



◀◀ 화물운송시장 동향 차주조사 개요

□ 조사목적

- 화물자동차의 시장진입 비용, 운송수입·지출 구조, 운행·근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화물운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 수립 및 산업연구를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주기 및 기간

- 조사주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2회 조사
- 조사대상 기간: 상반기(3월 실적), 하반기(9월 실적)
- 조사수행 기간: 상반기('23.5.22.~6.20.), 하반기('23.10.26.~11.17.)

□ 조사방법

- 조사 수행원을 통한 현장 면접조사
- 추가 조사결과 검증 및 보완을 위한 전화조사

□ 조사대상

- 업종: 일반/개인 운송사업자
- ※ 기존 업종(일반/개별/용달)과 통계 수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화물자동차 등급별로 재구분하여 통계 산출
- 조사규모: 연간 4,400명 (반기별 2,200명)
 - (연간) 일반: 3,160명, 개별: 740명, 용달: 500명
- 차량 유형 및 운송품목
 - 카고형: 화물자동차 중 일반적인 개방형 적재함 구조의 차량과 폐쇄형 적재함(탑차, 원바디) 구조의 차량을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품목을 운송
 - 견인형 특수자동차: 피견인차(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차량으로 컨테이너, BCT(벌크 시멘트), 기타 트레일러(철강재)로 구분하여 조사
 - 탱크로리: 유류 운송용 차량에 한정하여 약 20,000L의 유류를 운송 가능한 중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그러나 지난 2024년을 마지막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자동차 운수시장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작성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반드시 필요한 조사임에도 근거 법률이 미비함을 이유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설명임.

이에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시장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에 관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축적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화물운송시장 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할 수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화물운수사업 시장에서는 정책 수립에 있어 객관적 현황 파악 및 진단이 필수적으로, 개정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과 시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의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 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
하여 반영함